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트다이내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유 :

- (1)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 이익 분배 방법을 평가 이익 유보에서 전액 분배로 변경
-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15년 9월 8일

□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	<신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15.07.31</u>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환매조건부 매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2015. 6. 26.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삭 제>

	<u>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u>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u>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u>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u>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2015. 6. 26.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2015. 6. 26.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u>2015. 6. 26. 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u>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u>)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u>원 이하인 경우</u> <u>-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u> <u>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u> <u>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u> <u>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u> <u>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u>
--	--	---